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지급여 지원목적, 대상자의 범위와 생활여건, 급여의 성격 등 복지사업별 특성에 맞게 소득 및 재산조사 항목을 보다 간소화함으로써 복지급여 수급자격 판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급여 이용 편리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이를 위해 차상위자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중 일부 조사항목을 간소화하기 위해 재산조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처분한 재산의 반영을 조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5년이 아닌 202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처분한 경우로 확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을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제도의 기본원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8. ~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2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 5조의3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 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 ----- ----- -----.
1. <u>일반재산</u>	1. <u>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u>
가. ~ 아. (생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u>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중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u>	4. <u>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2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u>

<u>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연 락 처	(044) 202 - 3056